

LG화학, PP 가격담합 과징금 철폐

27억원 납부명령취소 소송 패소 ... 시장 과점으로 경쟁제한 효과 명백

LG화학이 2007년 불거졌던 PP(Polypropylene) 가격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5월26일 LG화학이 PP 가격담합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사가 PP 제조·판매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는 거의 없어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본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LG화학, 호남석유화학, SK, GS칼텍스, 효성, 대한유화, 삼성토탈, 삼성중합화학, 씨텍 등 석유화학기업 9사가 2003-05년 PP 판매 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2007년 6월 총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화학은 자사에 부과한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한 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6>